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 안 번 호	22-9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 . 1.

발 의 자 : 이민석 위원 외 6 명

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,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일부터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다.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.

2. 제안 이유

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,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.

- 마포구의회에서는 마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원 스스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유지에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음.
- 이에 사전 ·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· 운영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고, 마포구의회의 자율적인 위상정립과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·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- 나날이 높아지는 공직자 및 지방의원의 청렴, 윤리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와 구민의 요구를 대변하고, 지방의원 윤리강령 지침에 부합하여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참고 사항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
- 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위원회 조례」 제7조
- 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

(관 계 법 령)

□ 지방자치법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□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<개정 '09.2.5>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07. 3. 22.>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□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
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